

사업자등록 의무

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

가. 사업자등록의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 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관청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근거 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 2119 판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는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한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사업자등록의 성질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 6903 판결).

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시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한편, 해외개발자의 앱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국외오픈 마켓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
-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함.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 거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가령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인·허가 없이 사업 중인 경우, 법률상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 사업자등록 정정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상호변경, 사업의 종류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 등이 정정사유에 해당한다.

사.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

(1)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 등 사업인 경우에는 폐업신고확인서와 사

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일자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만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채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가 인가,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아.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현황 신고서를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1) 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면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①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②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③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④종전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효과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되며,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종된 사업장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주세법·개별 소비세법·지방세법 등에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차. 기타 상가건물 확정일자 제도

상가건물 확정일자란 상가건물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서 강제집행 시 우선변제 여부의 기준일자가 된다.

한편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의 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2. 소득세 사업자등록 의무

(1) 의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내용과 동일하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차이점

한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만 과세가 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여 1년에 한 번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세무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19.2.12.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법인 아닌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단체 등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는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 법인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의무

※법인 설립 절차

- ①발기인 구성:회사의 소유자 즉 주주가 될 사람 결성
- ②정관작성 : 영업내용, 회사의 상호, 자본금, 사무실 소재지
- ③출자와 주식 인수
- ④기관구성: 이사 또는 감사 선임
 - * 이사회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 ⑤2주 이내 설립 등기 경로

※법인 설립시 준비사항

- ①주주와 임원의 인감증명서
- ②주주와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 ③취임승낙서
- ④은행잔고증명서
- ⑤법인인감도장

가. 내국법인 설립신고 의무

(1) 의의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와 주주 등의 명세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첨부서류

① 법인설립신고(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등 기재).

② 주주 등의 명세서.

③ 본점 등기부 등본 1부(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④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⑥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 인·허가 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⑦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명세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①농업회사법인 구성원

- 발기설립인 경우: 주주(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일 것
- 주주(발기인) 전원이 농업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을 것
- 농업법인 이사의 1/3이 농업인일 것

②사업목적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나. 내국법인 사업자등록 의무

(1) 의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설립일, 허가일 또는 인가일, 등록일, 기본재산을 출연받은 날, 승인일 등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와 법인의 명칭,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대표자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자의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수익사업의 사업장 등이 기재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가) 국내영리법인 본점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본점 등기부등본 1부
-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명세서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일부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 인·허가 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명세서

(나) 국내영리법인 지점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본점 등기부 등본 1부(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일부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 인·허가 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명세서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의 사

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법인 설치신고

(1) 개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와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국내사업장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 ㉣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 ㉤ 지점등기부 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정관 또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①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명의로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③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마. 법인의 휴·폐업 신고

(1) 폐업사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폐업, 청산, 합병,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2) 구체적인 폐업시기

-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 분할로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 등기일
- ㉣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6개월이 되는 날
- ㉤ 폐업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바. 사업자등록의 말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도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인·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각종 현장확인 시 사업장 방문 결과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되어 무단전출자로 확인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법인, 법인세 무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자로서 현지확인 방법으로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법인, 각종 우편물을 사업장에 발송한 결과 이사 감 또는 수취인 불명 등으로 표시되어 반송되고 사업장 소재지에 전화 연락하여도 통화가 불가능한 법인, 기타 명의위장으로 판명되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등.

사. 고유번호 부여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여 대상은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에 의하여는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다만,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즉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권장하거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 차용 또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 ①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 ②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이미 타

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상태에서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④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행위

이러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령, 세금납부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단독사업자임에도 소득분산을 위해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이 인정된다.

한편, 명의대여자는 ①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②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③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그 밖에 명의차용자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채무가 있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명의차용자(실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될 수 있다.

※창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

1. 사업자등록 의무

2. 창업관련 조세지원 제도

가. 개요

- 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
- ② 창업후 3년 이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④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나. 지원 내용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법인세 감면 내용(직접지원)

(1)일반창업

-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법인세 50% 감면(연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연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2)청년창업

-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법인세 50% 감면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법인사업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

(3)생계형 창업

- ①대상: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하 과세연도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인세 50% 감면
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 법인세 100% 감면
(4)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50% 법인세 감면

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②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